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2015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준공검사의 구비서류'에 대한 규제는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규정한 것으로써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실익은 적으므로 재검토 기한 설정을 해제함

2. 주요내용

가. 준공검사 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시행 규칙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진행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11.18~12.28 예정)

3) 행정규제 : 국조실 일몰규제 심사("20.10.23.) 결과반영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u><삭 제></u>